

월간 세무회계 뉴스 (2017년6월)

주제 :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

세무법인 WITHPLUS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및 법률 정보를 종합하여 매월 월간레포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
1.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

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,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 신고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수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매월 단위, 매2월 단위,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, 환급은 일반환급보다 빠른 15일이내에 이루어집니다.

2. 조기환급 대상

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
- ② 사업설비를 신설, 취득, 확장, 증축하는 경우

단, 이때 사업설비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.

3. 첨부 서류

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: 영세율 관련 서류
- ② 사업설비를 신설, 취득, 확장, 증축하는 경우 :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